

※ '89년 방위세, 교육세, 담배판매세 등을 폐지하면서 담배소비세로 일원화

○ 담배란

-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(담배사업법 제2조)

○ 과세대상 및 세율

-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,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

과세대상		과세단위	세율
피우는 담배	제1종 껴련	20개비당	1,007원
	제2종 파이프담배	1g당	36원
	제3종 엽껴련	"	103원
	제4종 각련	"	36원
	제5종 전자담배	① 니코틴용액 1㎖당	628원
		② 연초 및 연초 고형물 사용	껴련형 : 20개비당 897원
			기타형 : 1g당 88원
	제6종 물담배	1g당	715원
씹거나 머금은 담배		"	364원
냄새 맡는 담배		"	26원

※ 껴련담배의 경우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1갑(20개비)당 641원 부과(총량제)

Ⅰ 담배(4,500원 기준)에 과세되는 조세·부담금 내용 Ⅰ

담배소비세	정액	1,007원 (22.4%)
지방교육세	담배소비세의 43.99%	443원 (9.8%)
국민건강증진기금	정액	841원 (18.7%)
폐기물부담금	정액	24원 (0.5%)
개별소비세	정액	594원 (13.2%)
부가가치세	판매가의1/11	409원 (9.1%)
조세 및 부담금 계		3,318원 (73.7%)
원가 및 이윤 등		1,182원 (26.3%)
판매가		4,500원

○ 납부방법

- 제조자(수입판매업자)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(보세구역)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